

자동차 잠깐! 여기는 사람이 먼저!

- 사람을 우선하는 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 해설편 마련·배포
... 보행자·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자 등 안전 및 편의 강화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「사람중심도로* 설계지침」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(목)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**한다.
 - *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도로
 - **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olit.go.kr>) → 뉴스.소식 → 공지사항)
- 국토부에서는 보행자, 고령운전자,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'21년 3월 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을 제정*한 바 있다.
 - * 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 제정('21.3), 개인형 이동장치(PM)를 고려한 도로설계 반영('23.10)
-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-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,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하였다.
 -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, 보행자와 고령자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방법,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.
 -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(작은 바퀴, 넓은 회전반경 등)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,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.
-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“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”된다면서,

- “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Km/h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”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도로국 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수영	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	신종욱	(044-201-3907)
			주무관	김로타	(044-201-3893)
<협조>	한국도로협회(도로교통연구실)	책임자	연구실장	윤재용	(02-3490-1078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참고 1

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 해설편 주요내용

도로 유형	특 성
도시지역도로	·도시지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설계속도 저감(50km/h ↓) ·승하차, 환승 등 대중교통망을 고려한 도로계획
보행자	·차량 최소화, 블록포장 등 “보행자우선도로” 설계 확대 ·교통약자 등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하도록 설계
고령자	·교통상황 판단이 어려운 구간은 노면색깔유도선 등 적극설치 ·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중앙보행섬 설치(6차로 이상)
개인형이동장치	·보행자, PM 이용자들간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분리(상충無) ·PM의 작은 바퀴를 고려하여 차도와 접속구간은 턱이 없도록 설계

① **(도시지역도로)** 도시지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**도시지역도로에는 20~50km/h 설계속도를 적용**할 수 있도록 규정(20~30km/h 저감)*

* 「도로구조규칙」에 도시지역 도로는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40~80km/h로 규정

- **도시지역 주민이 버스,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** 승하차, 환승 등 **대중교통시설을 고려하여 도로를 계획**하고
- **교통정온화 시설 설치** 등을 통한 물리적 도로 개선, **교통섬 설치**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통한 **보행자 안전 개선**
- 또한,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**그늘막**, **도로변 소형공원(Parklet)**, 등 **부대시설을** 설치하여 도로 이용의 **편리성도 향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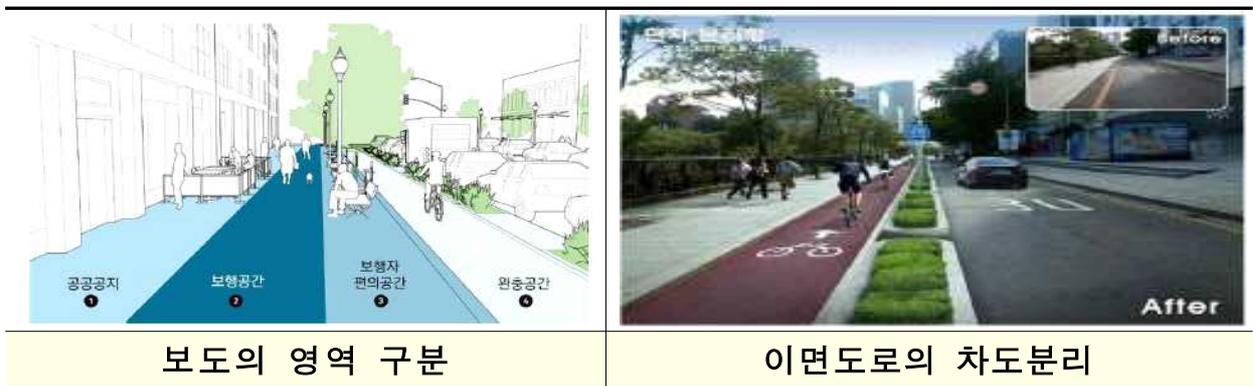
교통섬 개선	도로변 소형공원
	
교통섬 시야 확보로 보행자 안전 향상	도로이용자에게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제공

② (보행자를 위한 도로) 어린이,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공간 확대(내민보도) 등 개선

- 특히, 보행자 등 사람의 이동권리 보장을 위해 일방통행 등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며, 차량이 진입했을 경우 사람 우선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색깔, 패턴포장 등 보행자 우선도로 설계* 적용

* 도로법 제10조 특·광역시도, 시도, 구도 등에 지정된 보행자 우선도로에 적용

- 또한, 교통약자가 횡단보도 등에서 휠체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도와 차도의 연결부에 턱이 없도록 설계



③ (고령자를 고려한 도로)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,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의 구조 개선, 안전·편의시설 등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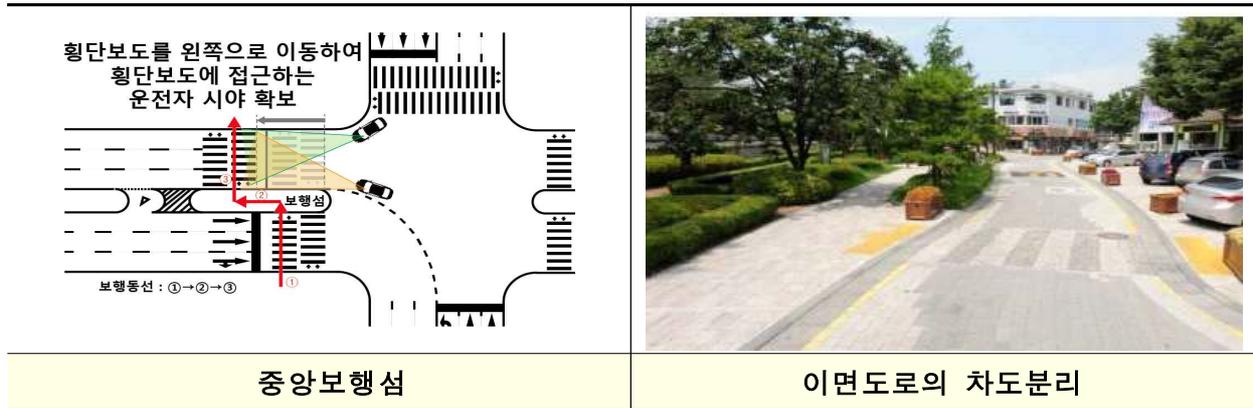
-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대향차량을 쉽게 인식(심리적 안정감 ↑)할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계하고

- 교통상황의 판단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구간*에 대해서는 노면색깔 유도선, 차로지정표지를 적극 설치(색깔 통일)

* 직진에서 좌회전으로 갑자기 바뀌는 구간, 5지 또는 6지 교차로, 두 갈래 연결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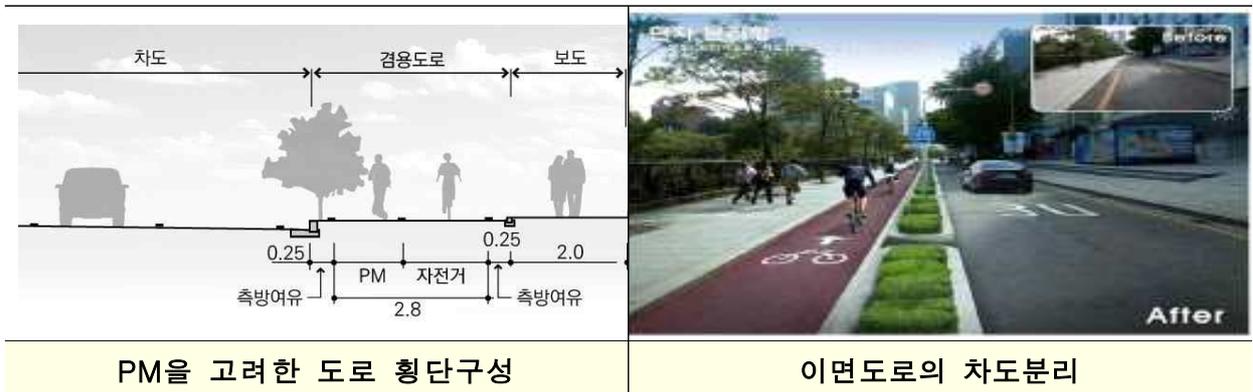


- 고령보행자가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이 부족할 경우 횡단보도 상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**중앙보행섬 설치**(6차로 이상)하고
 - *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설계 시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은 가급적 길게 확보하도록 유도
- 주·야간에 보행신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**바닥형 보행신호등, 휴식 공간 제공**을 위한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 **보행 편의시설 설치**
 - * 보행 편의시설은 유효 보도 폭을 확보하여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



④ (PM을 고려한 도로)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*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 명시 등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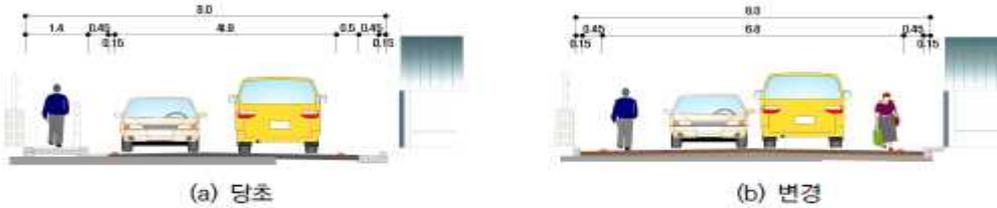
- *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최소 5m, PM을 고려한 도로는 7m 확보
-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**PM 통행로를 물리적으로 분리***, PM을 고려한 **도로폭 확대**하도록 설계하고,
 - *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
- 시선유도시설,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**안전시설 적용**,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**부대시설 설치**



참고 2 도면 및 설치 사례 예시도

□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예시

① 횡단구성 예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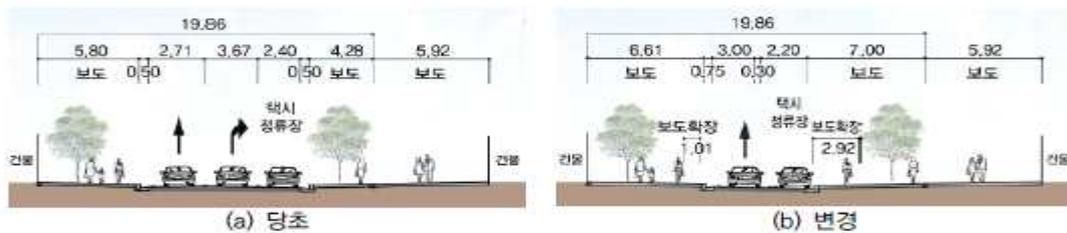
〈그림 3-37〉 보행자우선도로로 횡단 예시도

② 설치 예시도



□ 차로수 축소 설치 예시

① 횡단구성 예시도



〈그림 3-35〉 차로수 축소 횡단 예시도

② 설치 예시도

